



명예퇴직 및 수당지급 시행세칙

규정번호	2-2-5
제정일자	2001.03.01
개정일자	2022.03.10
책임부서/팀·계	기획처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신안산대학교 명예퇴직 및 수당 지급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2조(적용구분) 명예퇴직 및 수당 지급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.)과 이 세칙의 교직원이라 함은 교원, 일반직원, 기능직원을 말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3조(근속년수의 계산) 규정 제4조의 근속년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근속년수의 계산 기준일은 명예퇴직예정일로 한다.
2. 학교법인 순효학원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.)이 경영 유지하는 학교의 교직원 및 법인의 일반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. <2019.11.14. 개정>
3. 재직 중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수당지급신청) ① 수당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.

② 수당지급 신청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(翌日)을 종료일로 한다.

제5조(수당지급심사대상) 수당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6조(수당지급의 절차) 규정 제3조의 사무관장부서장은 수당지급대상자가 임면권자의 승인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사직서의 제출기한, 수당의 지급절차 및 방법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당의 지급시기) 수당의 지급 시기는 명예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본교의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 <2022.03.10. 개정>

제8조(수당 수령권자) 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, 부득이 본인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불임 2

명예퇴직 신청서

소 속		직위(직급)	
성 명		주민등록번호	
주 소			
근속년수	년 월	명예퇴직 희망일자	년 월 일
명예퇴직 신청사유			
본인은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규정 제8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20 년 월 일			
신청인 : (인(서명))			
신안산대학교 총장 귀하			
위의 명예퇴직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			
공 람	담당	계 장	과 장
			처 장